



문 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과 장 류동현 주무관 박승배	042-481-5879 042-481-8444
  2017년 11월 28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1월 27일(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정, 시행

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심판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사건의 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고준호 심판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특허·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처리된다.

특허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사실상 재판의 1심에 해당하므로, 재판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간 심판관들의 행동을 규율할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심판관 윤리강령은 특허심판에서 더욱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심판관이 당사자와 대리인 등 진행중인 사건의 관계인과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만나는 것을 제한하였다.

또한 특허청 퇴직자, 특히 심판관으로 퇴직한 변리사가 퇴직 후 2

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근무했던 심판부가 아닌 다른 심판부에 배정되도록 하거나, 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여 전관예우 문제로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여지를 없었다.

윤리강령은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판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비밀 유지,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이 반영되었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허심판원 심판관 전원은 27일 개최된 윤리강령 선포식에서 향후 심판 과정에서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사무관 박승배(☎ 042-481-8444)으로 연락 바랍니다.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은 11월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95명의 심판관을 대상으로 윤리강령선포식을 실시했다.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2017. 11. 27. 제정

제1조 (목적)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판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위 유지) 심판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 심판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심판관은 성별·종교·혈연·학연·지연·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심판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되,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 심판관은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제5조 (직무상 비밀 엄수 등) ① 심판관은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사건내용, 심판의 합의내용 등 심판관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직무의 부당이용금지) ① 심판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심판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심판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 특허심판원에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인을 심판절차 중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심판관의 직무의 활동) ① 심판관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심판관은 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9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심판관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이 강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